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4조 (서비스의 구분)

제5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제6조 (이용신청)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8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제9조 (단말기 및 장비의 이용)

제10조 (전화번호의 부여)

제11조 (이용자 고객 번호 부여 및 변경 등)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제15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제 4 장 서비스 이용 휴지, 정지 등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제1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19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0조 (이용자번호 관리 등)

제21조 (자료의 저장)

제22조 (게시물의 저작권)

제 5 장 계약기간 등

제2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 제25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 제26조 (해지)
- 제26조의 1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제 6 장 이용요금

- 제27조 (요금의 종류)
- 제28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 제28조의1(복지용전화의 감면)
- 제29조 (요금의 계산 구분)
- 제30조 (요금납입책임자)
- 제31조 (요금의 납입청구)
- 제32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 제33조 (가산금의 부과)
- 제34조 (체납의 청구)
- 제35조 (요금의 이의신청)
- 제36조 (요금의 반환)
- 제37조 (선불 통화 사업)

제 7 장 침해사고

- 제3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제39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 제40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 8 장 손해배상

- 제41조 (손해배상)
- 제42조 (손해배상의 청구)
- 제43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 제44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제 9 장 번호이동성

- 제45조 (번호이동 신청)
- 제46조 (변경 및 등록)
- 제47조 (통화권 준수)
- 제48조 (고객보호)

제 10 장 발신번호 변작방지

제49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제50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51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제52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제53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제5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제 11 장 기타 사항

제55조 (품질향상계획)

제56조 (망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부 칙

제1조 (시행일)

<별표 1> 이용요금

<별표 2>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요금표

<별표 3> 구비서류

<별표 4>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별표 5> 할인행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기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그리고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 일전에 공지합니다.
4. 이 약관 및 약관의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jcntv.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5. 이 약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 ② 국제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세계 국가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단,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신 국제호에 한함)
 - ③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자
 - ④ 이용계약: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⑤ 전화번호: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숫자의 조합
 - ⑥ 이용자번호(ID): 이용자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⑦ 비밀번호: 이용자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⑧ 단말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전화기(전화, IP 폰, 화상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 ⑨ 추가단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 전화를 접속하는 단말(MTA, IP-PBX 등)
 - ⑩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에 대하여 해약하는 것
 - ⑪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⑫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⑬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SMS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⑭ 기본료 : 요금제 가입시 전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 ⑮ 통화료 : 요금제 가입시 기본료 요금과는 별도로 전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2. 1 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4 조 (서비스의 구분)

1.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자의 건물 또는 덕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3.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4. 회사는 제 1 항의 서비스에 연계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1.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3. 스마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 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별표 3]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시는 신청서를 면제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실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 납부시
 - ②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인증
 - ③ 운전면허번호 인증
 - ④ 휴대폰 인증
 - ⑤ 공인인증서 인증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아래 제 9 조에 기재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에게 다음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① 이용자번호
 - ②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 ③ 이용요금 및 특약에 관한 제반 사항(할인반환금 포함)
 - ④ 판매자 정보에 관한 사항
 - ⑤ 이용 청약(개통) 상품에 대한 정보
 -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 ⑦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⑧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 ⑨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필수 제출 정보의 허위, 누락, 오기 포함)를 첨부한 경우
 - ②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④ 제27조 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 ⑤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설치 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②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단말기 및 장비의 이용)

1. 이용자는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서비스의 개통예정일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접속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를 서비스지역 내에서 변경 시 이용자는 변경 3 일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임차한 장비를 회사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임차한 장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전화번호의 부여)

1. 회사는 승낙 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2. 회사는 구내 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 고객 번호 부여 및 변경 등)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하며, 회사는 유동 IP 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자번호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 고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자번호는 소멸됩니다.
 - ①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 설치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3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1877-9100

7.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②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③ 수시 고지 : SMS, DM 등

9.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전화번호 및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이용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6. 이용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별도의 서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의 계약 수량을 초과하여 단말기를 연결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IP 공유기를 사용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9.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 ①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 개월
3.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인종 및 민족
 - ② 사상 및 신조
 - ③ 출신지 및 본적지
 -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⑤ 건강상태 및 성생활
4.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 4 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 ③ 어린이(14 세 미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⑥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6.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를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8.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휴지, 정지 등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1.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서비스 제공 휴지가 3 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서비스 기본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 (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요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② 기타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③ 제48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7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 ⑤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⑥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⑦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 ⑩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⑪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이용자는 이용정지 사유를 지체 없이 해소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1. 국가비상사태, 불온통신의 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자에게

7 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정지는 년 90 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용자가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일시이용정지 기간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월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장비임대 계약기간에 포함합니다. 회사는 제 2 항의 일시이용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이용정지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번호 관리 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번호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제반 문제(제 3 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자료의 저장)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곳에 게시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각 이용자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의 저장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②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 ③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제 2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이용자가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기간 등

제 23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1 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계약만료 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자동 연장된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단, 장비임대시 장비에 대한 위약금은 [별표 1]의 장비임대료 위약금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제 24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용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②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③ 인터넷전화 단말기기의 설치 장소 변경
 - ④ 요금제의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 장소가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이전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25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 ①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 ②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 ③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④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 1 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4 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 ②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 ③ 제 25 조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 ④ 제 25 조 제 1 항 제 4 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⑤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4. 이용자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 전까지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별표 3]의 구비서류를 해지 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 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자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며, 요금 미납 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시 SMS, E-mail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1 회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 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②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시 이용 중단 기간 내에 재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 정지를 당한 경우
 - ⑤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⑥ 이용자가 요금 납부 등 제 14 조에서 명시한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군입대 하는 경우
- ⑤ 제 24 조 제 2 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 ⑥ 약정 만료 전 가입자가 최저속도 미달로 10 일 이상 감면 받은 경우
- ⑦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1>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단, '22. 4. 1.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에 한하여 다음 다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단, 아래 다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 다. 이전 설치 요청 건물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 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8. 회사는 위 5 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 26 조의 1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 2. 제 26 조의 1 제 1 항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①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② 내용증명 발송
- 3. 제 26 조의 1 제 2 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이용요금

제 27 조 (요금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치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로서 설치시에 납입.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 ② 기본서비스료: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기본료와 통화료가 있음
 - ③ 부가서비스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되는 요금임
 - ④ 장비 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 ⑤ 이전 설치비: 이용자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하는 요금
2. 제 1 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 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이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회사의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자격 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할인을 소급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4. 이용자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5. 회사는 창사기념일 및 신상품 출시 시 이벤트 기간을 정하여 설치비 및 기본이용료 무료혜택을 주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에 기재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6. 회사는 인터넷전화 제공 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 4]과 같습니다.
7.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 개통지연 대기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8.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9.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의1(복지용전화의 감면)

1.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③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 ④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 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단체(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 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 ⑩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제 29 조 (요금의 계산구분)

1.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구분됩니다.
2. 일액요금의 계산은 0 시부터 24 시까지는 1 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 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 일로 합니다.
3.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 일부터 말일 까지를 1 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장비임대료는 개통월 및 해지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해지희망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며 해지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기본료 및 장비임대료의 일할 계산은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6.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7.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 (요금납입책임자)

1. 요금의 납입책임은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 요금납입책임자는 1 차 납입 의무를 지고, 이용자는 2 차 납입 의무를 집니다.
 - ① 제 3 자 요금부담 또는 제 3 자 과금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책임자
 - ② 자동 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 약정 이용자
 - ③ 요금납부각서인
 - ④ 타인명의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서비스 이용자

제 31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 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 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가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상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1. 요금 납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지로에 의한 방법
 - ② CMS(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 ③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④ 현금에 의한 방법
2.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 33 조 (가산금의 부과)

1. 서비스 이용요금 (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3. 회사는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이용자를 신용 정보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4 조 (체납의 청구)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제 35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이용자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6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한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요금 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 37 조 (선불 통화 사업)

회사는 요금을 선불로 받아 서비스하는 선불통화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침해사고

제 38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④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을 이용합니다
3.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③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회사의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9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8 장 손해배상

제 41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최근 3 개월(3 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 일 평균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24 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 시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 42 조 (손해배상의 청구)

본 약관 제 42 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자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43 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4 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1.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와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서비스 개통 전 개별 약정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2. 전항의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개통일, 계약기간, 계약요금, 계약시 모뎀임대료, 계약기간 만료이전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및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이용약관상 주요 조항을 명시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성

제 45 조 (번호이동 신청)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 ②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다.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 3 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46 조 (변경 및 등록)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 47 조 (통화권 준수)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 48 조 (고객보호)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 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32 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3.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10 장 발신번호 변작방지

제49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50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41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1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③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 ④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②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 ③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2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의 전승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40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①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 ②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 ③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 ④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②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3.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위 3항과 4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제 11 장 기타사항

제 55 조 (품질향상계획)

1. 회사는 전화서비스 이용자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 ①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 ② 인터넷전화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Software/Hardware Upgrade
 - ③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통화량 모니터링 및 통화량 증감에 따른 회선용량 증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 인증 절차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 ⑤ 이용자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정시기에 대비한 특별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 56 조 (망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1. 회사는 기간사업자와의 망 연동시 이중화 정책을 시행하여 어떠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우회호 소통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연 2 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 26조(해지) 7항의 7, 제 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 8항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1. 서비스이용료

가. 표준요금제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량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납입하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함
- 적용기준 :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

○ 기본료

- 표준요금제 가입시 전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상품명	내 용	요 금
포디폰	이용자가 케이블TV 회선을 통해 당사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월4,400원

○ 통화료

- 표준요금제 가입시 기본료 요금과는 별도로 전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구 분	서비스 형태	요 금
포디폰	인터넷전화→일반전화(시내/시외)	41.8원/180초
	인터넷전화→이동전화	12.87원/10초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	41.8원/180초
	주파수 공용통신(TRS)	16.5원/10초
	망내통화	무료
	인터넷전화→국제전화	[별표2] 국제전화 요금표 참조

1. 국제전화 사용시 국제전화서비스(00777)를 이용한 발신번호는 KCT(주)한국케이블텔레콤의 국제요금이 적용되는 서비스이며, 국제전화서비스(00700)을 이용한 발신번호는 [SK텔레링크(주)]의 국제전화 요금이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2. 망내통화란 070번호를 사용하는 회사의 가입자 및 회사와 재판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070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 간 통화로 정의합니다.

망내통화 무료 제공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전화 발신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 상기 통화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및 회사가 정한 국제전화에 한해 적용되며, 특수번호(112, 116 등의 1YY 또는 1YYYY 계열) 및 수신자부담서비스(080), 정보제공서비스(060), 전국대표번호서비스(1588 등), 콜렉트콜, 개인번호서비스 등 전화부가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57요금제 이용료

- 이동전화 발신 시 통화료 할인

○ 기본료

- 57요금제 가입시 전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VAT 포함)

구분	요금	비고
기본료	월 5,720원	방송 또는 초고속인터넷 결합 시 4,400원

○ 통화료

- 50요금제 가입시 기본료 요금과는 별도로 전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VAT포함)

구분	서비스 형태	요금
음성전화	인터넷전화→일반전화(시내/시외)	41.8원/180초
	인터넷전화→이동전화	7.975원/10초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	41.8원/180초
	주파수공용통신 (TRS)	16.5원/10초
	망내통화	무료
	인터넷전화→국제전화	[별표 3] 국제전화 요금표 참조

다. 무선인터넷전화

- 무선인터넷전화 3년 약정 가입시, 무선인터넷전화기와 전용 AP 세트 단말기를 무과금 할부(무료)로 판매하며,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1) 무선인터넷전화 요금은 [별표1] 이용요금의 표준요금제 기본료와 통화료에 준한다.

2) 무선인터넷전화 상품 출시 이벤트

▶ 무선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기본료 월 4,400원을 50%로 할인한다.

(결합상품 가입자인 경우 50% 할인된 기본료에 추가로 2,200원 할인. 단, 약정/번호이동 중 해지시 할인 받은 기본료를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3) 무선인터넷전화 상품 해지시 위약금 및 분실(훼손)시 산정식

위약금 항목	위약금 산정식
단말기 할부금	약정기간 잔여 개월수 X 3,300원
약정/번호이동 중 해지시	할인 받은 기본료 X 사용 개월 수

4) 단말기 분실 및 AS에 따른 처리

구분	세부사항
분실	동일규격 장비로 고객 재구매(당시 시가로 당사판매)
AS	단말기 훼손 및 장애시 제조업체에 고객님의 AS요청 (AS기간 동안 서비스를 위해 당사 단말기를 무상 임대함)

라. IP-Centrex 서비스(소규모 사업장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 기업내 IP PBX를 직접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이 통신사업자 내부의 시스템을 일부 임대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P 교환기 시스템 서비스

구분	요금(부가세포함)	비고
가입비	11,000원	
기본료	5,500원/번호당	
통화료	시내전화	41.8원/3분
	시외전화	41.8원/3분
	이동전화	12.87원/10초
	인터넷전화	41.8원/3분
	국제전화(00777)	55원/1분
설치비/ 이전비	IP폰 : 1회선당 16,500원, MTA : 1회선당 11,000원 WIFI폰 : 1회선당 기본 15,000원(AP설치비 별도 부과) G/W : 대당 88,000원(포트수에 무관, MDF 작업추가시 별도 협의) 다회선 가입 할인의 경우 별도 협의 후 결정	
장비 및 단말정책	IPT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단말구매는 원칙적으로 고객사가 부담함 (단, 단말임대 요구시 단말모델에 따라 임대료 차등적용 원칙→별도 협의)	

2. 설치비(부가세 포함)

가. 가입설치비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1접속 회선당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구 분	요 금		비 고
포디폰	단독	22,000원	전화기당
	아파트	16,500원	

- ※ 설치지역이 특수환경일 경우에는 별도 견적에 따른 실비 부과
- ※ 1년 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비(가입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설치비(가입설치비, 재연결비)를 면제 받은 고객이 1년 이내 해지 시 고객은 면제 받은 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이전설치비

- 서비스를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1접속 회선의 변경설치 소요비용

구 분	이전(주소변경)		택내이전	비 고
포디폰	단일상품	22,000원	-	전화기당
	결합상품	16,500원	-	

- ※ 설치지역이 특수환경일 경우에는 별도 견적에 따른 실비 부과

다. 재연결비

-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 된 이용자가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재연결에 소요되는 실비

구 분	요 금		비 고
포디폰	단일상품	22,000원	전화기당
	결합상품	16,500원	

- ※ 1. DPS(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케이블TV서비스와 인터넷전화 가정용 서비스를 동시 이용) 또는 TPS(초고속인터넷서비스, 케이블TV서비스와 인터넷전화 가정용 서비스를 동시 이용) 고객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비(가입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 설치비(가입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를 면제 받은 고객이 1년 이내 해지 시 고객은 면제 받은 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장비임대

가. 장비임대료(TA)

- 해지 시 다음과 같이 고객은 단말기 손실비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해지 시 단말기 구매조건: 단말기 금액 - 납부한 단말기 임대료(단말기 고객소유)
 - 1년 이내 해지 시 : 단말기 반납 + 33,000원(단말기 손실 비용/부가세 포함)
- ※ DPS/TPS(초고속인터넷서비스, 케이블TV서비스와 인터넷전화 가정용 서비스를 동시 이용) 고객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장비 분실 및 훼손 시 변상금 계산

- 장비 분실 및 훼손 시 변상금 계산식: [(72개월-사용개월수)/72개월]×장비가격
- ※ 1. 사용개월수 산정 시 일할 계산
 - 2. 사용개월수가 7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72개월로 계산
 - 3. 장비가격은 분실/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동일규격 장비가격.
 - 4. 장비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 금액 청구

4. 부가서비스(부가세 포함)

가. 단독서비스 이용료

- 각각의 부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요금

부가서비스명	내용	요금	기본제공서비스
발신번호 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CID)를 표시	1,100원/월	
무조건 착신전환	착신 호를 무조건 미리 정해 놓은 번호로 연결	880원/월	
조건별 착신전환	착신 호를 조건부(무응답, 통화중, 미등록)로 미리정해 놓은 번호로 통화 연결		
통화중 대기	통화 중 새로운 호 착신 호 통보	880원/월	
통화 재시도	착신자가 통화중일 때 서비스코드(*)를 입력해 두면 자동으로 통화연결	1,100원/월	
SMS	자사가입자간(VoIP간 발송 포함) -VoIP 가입자에게 SMS 발송	11원/건	
	무선송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SMS발송	16.5원/건	
영상통화	사용자간 화상정보를 보여줌	3,300원/월	
통화연결음	음악 등을 통화연결음으로 들려줌	990원/월	
변경번호 안내서비스	번호 변경시 변경된 번호 안내	1,100원/월	
변경번호안내서비스	KCT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의 번호가 변경된	1,100원/월	

(번호이동성 이용 시)	경우 변경된 번호 안내(최대6개월 까지 제공 가능하며 , 최초 1개월 무료제공)		
발신번호 숨김	CID를 착신자에게 표시하지 않음	무료	○
통화별 발신번호 숨김	매 통화시 발신번호 숨김	무료	○
수신거부	특정 번호 수신거부	무료	○
익명발신 수신거부	CID 미표시 발신자의 호 연결 거부	무료	○
선택적 착신거절	특정 발신번호 20개까지 수신거부	무료	○
통화보류	현재 호 대기 후 새로운 통화 가능	무료	○
3자통화(준비중)	3자간 통화 가능 서비스	무료	○
단축다이얼	전화번호를 2자릿수 다이얼로 설정(20개)	무료	○

나. 패키지 이용료

- 다수의 부가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할인 요금

서비스 명	구성내역	요금
패키지 1	발신번호표시+착신전환+통화재시도+통화 중 대기 서비스	1,980원/월
패키지 2	발신번호표시 + 착신전환 서비스	1,430원/월
패키지 3	발신번호표시 + 통화재시도	1,430원/월
패키지 4	발신번호표시 + 통화중대기	1,430원/월
빅3패키지	발신번호표시 + 착신전환 + 통화중 대기	1,650원/월

5. 요금 할인

가. Digital케이블방송 및 초고속인터넷과 동시 신청(이하 결합서비스) 시 요금할인

○ 결합서비스

-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Digital케이블방송 동시 가입 시 적용하여 판매되는 서비스
- 대상요금: 인터넷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인터넷사용료, 방송사용료(아날로그/디지털)
- 결합서비스의 경우 장비임대료(인터넷전화 장비임대료 및 STB임대료, 모뎀임대료)는 할인하지 않는다

결 합 형 태	할 인 율			
	인터넷전화	인터넷	아날로그	디지털
인터넷전화+인터넷	기본료 50% 할인	사용료의 5%		

인터넷전화 + 아날로그 방송	기본료 50% 할인		사용료의 5%	
인터넷전화 + 디지털 방송	기본료 50% 할인			사용료의 10%
인터넷전화 + 인터넷 + 방송(아날로그)	기본료 50% 할인	사용료의 5%	사용료의 5%	
인터넷전화+인터넷+방송(디지털)	기본료 50% 할인	스피드상품 5%(10M) 광랜상품 10%(100M)		사용료의 10%
기업상품(3회선 이상 사업자)	기본료 50% 할인			

※ 결합서비스 중 초고속인터넷 및 Digital케이블방송 상품에 대한 장비임대료 위약금, 장비분실 및 미반납시 변상금, 서비스이용료 위약금 등은 본 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및 Digital케이블방송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요금감면

1) 기본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일시 이용중단 중인 전화	70%
2) 착·발신이 모두 정지된 전화	100%
3) 직권 정지 상태인 전화	100%
4) 청각 장애인	50%
5) 복수(2개 이상)신청에 따른 전화 요금할인(단독상품시 해당)	5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0%

2) 시내/시외 통화료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전화 및 전용 설비의 장애 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회사가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때의 통화		100%
복지용전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0%

	독립유공자유족	5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월150도수 공제 ^{초)}

^{초)}월간 시내/시외 통화의 총 이용도수에서 월 150도수를 공제합니다.

3)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전화 및 전용 설비의 장애 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회사가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때의 통화		100%
복지용전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1회선당 월 11,000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부가세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 실비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의 가입비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의 가입비	1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금감면 대상의 자격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발급·제출 없이 행정정보 연계 (통신요금감면시스템)를 통해 이용자의 자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 가입자간 요금할인

- 적용대상 : JCN울산중앙방송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구 분	제공서비스	통화료	할인율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통화	없음	100%

라. 번호이동성 이용료 : 전화 1회선 당 2,000원 1회 청구(부가세 포함)

마.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

- 전화번호 1회선 당 11,000원 1회 청구 (부가세 포함)
- 번호변경서비스는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해주는 서비스임.

5) 할인반환금 100% 및 50% 감면 대상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 감면	가입자 군입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 서류 중 택1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건물주 반대 일반고객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 전입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와 증빙서류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자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로 확인)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 전입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와 증빙서류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가입자 사망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할인반환금 50%감면	해외이민		해외 이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일반 고객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사업자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이전 설치 요청 시 특정 사업자 1개만 서비스 이용가능		전입 90일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 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6) 이용약관 본문 제28조 8항의 이용료 할인 대상

구비서류	비고
<p>“이전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필수)</p>	<p>-회사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 한 이후 적용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 중 회사에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p>

<별표 2>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요금표(00777 식별번호를 통한 인터넷전화 발신용 요금) (단위: 원/분)

국가명	후불제서비스요금 (원/분당/부가세 포함)	
	유선	무선
미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홍콩	55	55
대만, 말레이시아	55	110
일본, 호주	55	220
독일, 프랑스	55	275
뉴질랜드, 영국	55	330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55	385
노르웨이, 덴마크,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55	440
그리스	55	495
괌, 방글라데시, 사이판, 알래스카, 우즈베키스탄, 태국, 하와이	110	110
몽고, 인도네시아	110	220
베트남, 필리핀	165	165
마카오,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330	330
룩셈부르크, 마데이라, 모나코, 바티칸시티, 버뮤다, 브루나이, 산마리노, 아조레스섬, 핀란드	440	440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495	495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발레릭, 안도라, 지브랄타, 터키, 핏케인아일랜드	550	550
가나, 가봉,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트비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보츠와나, 부룬디, 불가리아, 세르비아, 세우타,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유고, 인도,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 터크메니스탄, 파로섬, 폴란드, 헝가리	605	605
과델로프, 네덜란드령안틸레스, 마티니크(프랑스), 몰도바, 미국령버진군도, 볼리비아, 브라질, 아루바, 엘살바도르, 영국령버진군도, 우루과이, 칠레, 케이만제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하이티	660	660
멕시코, 아르헨티나	715	715

국가명	후불제서비스요금 (원/분당/부가세 포함)	
	유선	무선
가이아나,감비아,과테말라,그레나다,기니아,나미비아,나이지리아,니제르,니카라과,도미니카,도미니카공화국,라오스,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마데가스카르,마요뜨,말리,모로코,모리타니아,모잠비크,몬테세라트,바베이도스,바하마,버키나파소,베네주엘라,베냉,벨리제,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세인트_킷츠_네비스,수단,수리남,시에라레온,아랍에미리트,아르메니아,아이보리코스트,아젠시온,아프가니스탄,안골라,안티구아,에리트리아,에콰도르,온두라스,우간다,이디오피아,이란,이집트,자마이카,잠비아,적도기니아,지브티,차드,카나리아제도,카메룬,캄보디아,케냐,케이프버드,코모로,콩고,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탄자니아,토고,튀니지,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포클랜드제도,프랑스령기아나	770	770
뉴칼레도니아,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마케도니아,미국령사모아,미얀마,바누아투,쌍썰에르&미켈론,서사모아,코코스섬,크리스마스섬,키리바티,타이티,통가,팔라우,피지	825	825
그린랜드,네팔,몰다브,부탄,웨이크아일랜드	935	935
루마니아	990	990
파키스탄	1,045	1,045
레위니옹	1,155	1,155
노르퓌섬,모리셔스,미드웨이섬,벨라루스,소말리아,안타티카,잔지바,쿠바,텍스케이코스제도,투발루,파푸아뉴기니아,해협제도,안틸레스(프랑스령)	1,210	1,210
니우에섬, 세이트헬레나	1,430	1,430
쿡제도	1,650	1,650
나우루	1,760	1,760
디에고가르시아, 솔로몬섬	1,980	1,980
웰리스푸투나	2,090	2,190
기니아비쏘, 토켈라우	2,310	2,310

<별표 3> 구비서류

【개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 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 국 인	일반,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1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외국인등록증 중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미성년자및법정대리인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등), 대리인신분증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대표자)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가능한신분증
(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이용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별표 4>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1. 최소품질

최소품질 항목		기준값
호 통화 품질	R값	70 이상
	단대단 지연	150ms 이하

2. 보상기준

가. 측정서버 : 회사 품질 측정 서버

나. 보상기준 : 30분간 10회 이상 전송품질을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 이상이 호 통화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한 품질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별표 5> 할인행사

1. 행사명: 전화서비스 출시 기념

2. 대상: 전화서비스와 JCN 울산중앙방송 방송/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 동시 가입자

3. 제공혜택(택 1)

가. 전화 기본료 6 개월 면제(통화료, 단말기 임대료 제외)

나. 전화 기본료 3 개월 + 일반 전화기(유선)

4. 기간: 2009 년 2 월 23 일 ~ 3 월 31 일까지